

## 운영세칙 개정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제1항 기초생활수급자, 등록장애인, 독립유공자에 한하여 <u>무료 수강할 수 있다.</u> 단, 타구의 구민 수강료 유료임	제2조 제1항 ----- ----- <u>무료 수강할 수 있고, 경로우대자(65세 이상) 부분감면(반액·헬스장 제외) 수강할 수 있다.</u> 단, 타구의 구민 수강료 유료임
제4조 2항 수강료는 3개월 단위로 접수하고, 접수방법은 신청서에 의한 방문 및 온라인 신청으로 하되 선착순 마감한다.	제4조 제2항 ----- ----- ----- <u>하고 접수기간내 신청한다.</u>
제4조 3항 접수순서는 다음과 같다. 1. 중구 청구동 관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(주민) 2.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(주민) 3. 기타주민	제4조 3항 <u>정원초과시 선정순위는 다음과 같다.</u> <u>1순위 중구민 신규회원</u> <u>2순위 중구민 기존회원</u> <u>3순위 타구민 신규회원</u> <u>4순위 신청(접수번호)순</u>